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김기현의원 · 김태선의의원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94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과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필요성	4
2.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8
1)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8
2)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10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11
4)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안 제5조)	11
5) 기부금품의 접수(안 제6조)	13
6) 대테러·안전대책 등(안 제7조)	14
7) 기금의 설치(안 제8조)	17
8) 자금의 차입·부담금 등의 감면 및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안 제9조부터 제11조)	18
9) 수익사업(안 제12조)	21
10) 기념주화의 판매 및 기념우표 등의 발행(안 제13조 및 제14조) ..	22
11) 수수료 등(안 제15조)	23
12) 예산서의 승인 및 결산보고(안 제16조 및 제17조)	24

13) 잔여재산의 귀속(안 제18조)	26
14) 국가 등의 지원(안 제19조)	27
15)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안 제20조 부터 제22조까지)	29
16)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23조)	31
17) 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안 제24조)	33
18)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25조)	34
19) 조성사업구역의 지정(안 제26조)	37
20)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안 제27조)	39
21)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안 제28조)	41
22) 실시계획의 승인 등(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42
23)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안 제32조)	46
24) 박람회 회장 등의 사용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안 제33조· 제34조·제38조 및 제39조)	47
25)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설립·운영(안 제35조)	48
26) 권한의 위임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36조 및 제37조) ..	49
27) 시행일 등(안 부칙)	51

I. 제안경과

가. 발 의 자 : 김기현의원 · 김태선의의원 · 윤종오의원 등 24인

나. 발 의 일 : 2025. 4. 4.

다. 회 부 일 : 2025. 4.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를 위하여 정부와 울산광역시 등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및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해왔으며, 이에 따라 AIPH는 2024년 9월 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박람회 개최를 최종 승인함.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고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체계 구축, 운영계획 수립,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사후 활용을 위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8년에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람회기금을 설치함(안 제8조).

라.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과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박람회의 준비·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

- 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국유·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사.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
-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박람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자. 국가는 박람회장에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을 설립·운영하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 활용을 강화함으로써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을 육성하도록 함(안 제35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필요성

2024년 9월 제76차 AIPH(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orticultural Producers, 국제원예생산자협회)¹⁾ 총회에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국비 96억원을 포함한 총 483억원의 재원²⁾이 투입되는 국가적인 행사로 추진되고 있음.³⁾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경과 】

- 국제행사 적격심사·타당성 검토 및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 기획재정부 제출('23.12.28.)
- 제140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기획재정부) 정책성 등급 선정('24.7.)
 - 정책성등급 B, 국비지원 가능(상한 20%), 행사장 중 삼산·여천매립지는 태화강 국가정원에 미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속 유지 방안 필요
-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승인('24.9.)
- 조직위원회 설립 및 종합실행계획 수립 용역 수행('24.12.~'25.12.)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25.4.4)
- 조직·예산 관련 관계기관 협의('25.4.~)

※ 자료: 산림청

1) AIPH는 1948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국제비정부기구로 2025년 4월 현재 31개국의 가맹국이 있으며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에 따라 국제원예박람회를 승인 및 진행하고 있음

2) 국비 96억 6,400만원, 울산 시비 241억 6,000만원, 수익금 144억 9,600만원으로 총 483억 2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3) AIPH 승인으로 개최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경우 관람객 981만명, 수익금 총당액 336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약 3.1조원(생산유발 2조 841억원, 부가가치 9,489억원), 취업유발 25,882명 달성

본 제정안은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조직위원회 설립과 사후 활용 등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⁴⁾

국가적인 대규모 행사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한 사례가 많고, 유사한 입법례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요 】

- ◇ 기간 : 2028. 4. 22 ~ 10. 22 (6개월)
- ◇ 장소 :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삼산·여천 매립장, 태화강 일원
- ◇ 규모 : 31개국 + α / 목표 관람객 1,300만명
- ◇ 주최 / 주관 : 산림청 · 울산광역시 / (재)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 ◇ 내용 : 국가정원 정비, 삼산·여천매립장 정원 조성, 국제심포지엄 등

※ 자료: 산림청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과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박람회장 조성의 측면에서 적기 조성을 위하여 국·공유 재산의 활용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⁵⁾⁶⁾ 예

4) 참고자료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개요 등 상세 설명자료

5) 산림청은 동 박람회 관련하여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행사의 시기·규모·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프라 구축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특별법을 통한 예외적이고 제한된 범위의 인허가 의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6) (관련 조문) 안 제20조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안 제29조 실시계획의 승인, 안 제31조 다른 법

컨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경우 박람회장이 이원화되어 있어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공유수면 내 선박 운항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관련 특례 등을 특별법을 통해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⁷⁾

둘째, 재정적 측면에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박람회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외에도 기부금품 접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등의 재원 마련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마련된 다양한 재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⁸⁾

셋째, 조직적 측면에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는 정부·지방자치단체·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업이 필수적인바,

박람회의 사업 전반을 전담하여 추진할 기구인 조직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위원회에 공무원을 비롯한 법인·단체의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울산광역시에 박람회 관련 전문가로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4항⁹⁾의 예외를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

물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7) (관련 조문) 안 제27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8) (관련 조문) 안 제6조 기부금품 접수, 안 제7조 기금의 설치 등

9) 「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 ④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⁰⁾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관련조문) 안 제5조 조직위원회 설립, 안 제21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2.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제정안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정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관련시설”이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에 관한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박람회 여건조성시설 및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정원 및 주제 전시관 나. 체험시설 및 체험시설 관련 편의시설 다. 박람회 운영·관리 시설 라. 전기·전자·통신·가스 시설 마. 그 밖에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박람회 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운영 및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정비가 필요한 주요 도로 등 교통시설 나. 문화예술 공연 시설

제 정 안	
다. 박람회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라. 홍보안내 시설	
마.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바. 그 밖에 박람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이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	
나.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및 박람회 여건 조성시설과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안 제1조는 동 법안의 목적이 2028년에 개최 예정인 울산국제정원 박람회의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 시설을 사후에도 계속하여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박람회를 위한 시설에 투입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안 제2조는 박람회 관련시설을 직접관련시설과 여건조성시설, 사후 활용시설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사후활용에 대한 정의규정을 둠으로써 박람회 개최 이후 사후활용의 사업 범위와 그 대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박람회 여건조성시설’,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은 제정법의 본문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안 제2조제1호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은 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이며,

기획재정부는 안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과 관련하여 도시경관은 지방이양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문화예술 공연 시설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제정안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는 박람회 지원에 관하여 동 법안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동 법안의 특별법적 지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으로 다른 법률과의 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문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박람회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주체로, 직접 박람회를 개최하는 울산광역시 외에 국가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볼 수 있음.

4)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안 제5조)

제정안은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제 정 안

- 제5조(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관리
 3. 박람회 참가국, 세계박람회기구 및 국제원예생산자협회와의 협력
 4. 그 밖에 박람회의 원활한 준비, 운영과 사후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④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 ⑤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⑥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⑦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는 박람회의 준비부터 개최 및 사후활용까지 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를 전담할 기구인 조직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이와 같은 전담기구의 설치에 박람회 또는 각종 국제대회의 행사 지원 등을 위한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보편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도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음.

5) 기부금품의 접수(안 제6조)

제정안은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항으로,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¹¹⁾에 따른 제한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임.

이를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정원문화 및 기부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참고로,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지원 특별법」이 있음.

【 유사입법례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지원 특별법」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 산림청

6) 대테러·안전대책 등(안 제7조)

제정안은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7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

제 정 안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테러·안전 대책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회원국 31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약 1,300만명의 참여가 예상되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문으로 보이며,

박람회 또는 각종 국제대회의 행사 지원 등을 위한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사항임.

다만,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동 조항에 따라 행정기관 내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정부 내 기구신설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0조¹²⁾에 따라 소관부처 직제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구 설치·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¹³⁾

1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0조(직제 등의 개정요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의 조정을 위하여 직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제 등의 안 2. 직제 등 개정요구서
3. 기관 일반현황 및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현황 4. 재배치 추진계획

13)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안 제7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제7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u>대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를 설치·운영</u>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테러·안전 <u>대책기구의 설치·운영</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u>대테러·안전 대책을 마련</u>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테러·안전 <u>대책 마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산림청은 대테러·안전 대책 기구는 박람회 기간에만 운영되는 한시 조직이므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0조에 따라 소관부처 직제로 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안전부의 수정의견을 수용 하더라도 제정안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임.

참고로,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는 다음과 같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있음.

【 유사입법례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7조(대테러·안전대책)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임원·보도진·종사자·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책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 제8조(대테러·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과 종사자·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책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 산림청

7) 기금의 설치(안 제8조)

제정안은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박람회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기금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보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품, 차입금,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구성하며 정부의 회계연도와 기업회계 원칙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8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박람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3. 제9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4. 제12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6.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박람회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8) 자금의 차입·부담금 등의 감면 및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안 제9조부터 제11조)

제정안은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위원회가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9조(자금의 차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제10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5.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사용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제 정 안
8.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9.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제11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률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이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일종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각종 박람회 및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입법에서 빈번하게 규정되고 있는 조항임.

참고로,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는 다음과 같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있음.

【 유사입법례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3.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사용료 4.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 5.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11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5.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사용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8.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자료: 산림청

다만, 산림청은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각 부담금의 설치 근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을 위한 부담금 감면은 형평성·감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각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¹⁴⁾ 관계 부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관계 부처 의견 】

- (기재부) 부담금 감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므로 안 제10조는 삭제 필요
- (환경부)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감면은 「하천법」 제37조와 제50조에서 규정하므로 안 제10조제5호, 제8호 삭제
- (농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농지법」 제38조 규정 사항이므로 안 제10조제9호는 삭제 필요
- (국토부) 개별법에 따른 특정지역의 개발부담금 감면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형평성 원칙에 벗어나므로 안 제10조제1호 및 제6호 삭제 필요
- (해수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여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므로 안 제10조제4호는 삭제 또는 수정 필요

※ 자료: 산림청

14) 안 제10조의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각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

9) 수익사업(안 제12조)

제정안은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과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2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운영 및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장사업 2. 기념주화의 판매 3. 박람회 시설임대사업 및 기념사업 4. 박람회 및 박람회 관련 문화·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5.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정원관광, 정원문화 및 정원치유사업 6.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건강·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 7.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람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정안은 박람회의 준비, 운영 및 사후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박람회의 재정자립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10) 기념주화의 판매 및 기념우표 등의 발행(안 제13조 및 제14조)

제정안은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과 박람회의 홍보 및 기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기념주화와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3조(기념주화의 판매)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4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박람회의 홍보와 기념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인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 등의 발행을 통하여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까지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이러한 기념사업에 관한 조항은 각종 박람회 및 세계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서 통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유사한 입법례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있음.

【 유사입법례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14조(기념주화의 판매)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5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1) 수수료 등(안 제15조)

제정안은 조직위원회가 박람회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직위원회 외의 자에게 박람회 관련시설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5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박람회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동 조항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개최 시 판매시설 임대료, 전기사용료, 화장 또는 공연장 사용료 등을 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는 수익사업 조항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박람회의 재정자립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참고로,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의 사례가 있음.

【 유사입법례 】

「2023 새 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16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세계잼버리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자료: 산림청

12) 예산서의 승인 및 결산보고(안 제16조 및 제17조)

제정안은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6조(예산서 등)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조직위원회의 재정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무관청인 산림청의 관리·감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

는 조직위원회의 업무 성격상 필요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산림청은 안 제16조가 주무관청인 산림청의 관리·감독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입법례¹⁵⁾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만이 아닌 승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울산광역시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임.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등이 있음.

【 유사입법례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17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직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19조(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자료: 산림청

15) 제16조(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3) 잔여재산의 귀속(안 제18조)

제정안은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잔여재산은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잔여재산은 제25조에 따른 사업계획 내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의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안 제5조제7항¹⁶⁾에 따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민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됨.¹⁷⁾

제정안은 조직위원회의 잔여재산을 1차적으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¹⁸⁾

2차적으로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 또는 무상대부하도록 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¹⁹⁾,

16) 제5조(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⑦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7)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18)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19)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궁극적으로는 사후활용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후단)

동 제정안의 목적이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18조는 필요한 조치로 보임.

14) 국가 등의 지원(안 제19조)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박람회의 준비·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협조 및 재정적인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가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9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박람회의 준비·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행정적 협조 및 재정적인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안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볼 수 있음.

【 유사입법례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박람회의 준비·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행정적 협조 및 재정적인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5)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등을 양여 또는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 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20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기관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면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에 따른 파견 근무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도

제 정 안

불구하고 제30조의4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는 박람회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을 위하여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위원회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인력과 전문적인 자료를 지원하여 박람회의 준비 및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는 범국가적인 지원과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박람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운영에 기여한다는 점, 각종 박람회 및 국제행사 등의 지원을 위한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조항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파견은 기관 범위 밖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예외적 인사 제도로써 기관 간 상호 동의를 전제로 운영하는 것인데, 안 제21조제2항은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그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선발·파견을 요청 받은 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인사혁신처 및 산림청도 일방의 요청에 따라 파견을 강제하는 것은 기관 고유의 인사권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선발·파견을 재량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6)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23조)

제정안은 박람회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산림청 차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3조(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박람회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박람회의 원활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려는 취지로 이

해할 수 있으나, 위원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성격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한편, 안 제23조제1항 중 “박람회와 관련된 시설”은 안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박람회 관련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의 난립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유사·중복위원회의 정부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①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산림보호 분과위원회)를 활용하거나,

②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사례와 같이 민간 위원을 제외한 정부 협의체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산림청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사례와 같이 정부 협의체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향후 법 제정 시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임.

【 유사입법례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박람회와 관련된 시설 사후활용 및 수익사업 등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안 제24조)

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박람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추어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4조(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람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정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지연을 막기 위한 우선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람회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이와 같은 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규정은 각종 박람회 또는 국제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서 빈번하게 마련되는 규정임.²⁰⁾

다만, 안 제24조제1항은 박람회 신축 및 개보수의 주체와 사업비 지원의 주체를 동일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논리적 모순이 있는바, 조문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 유사입법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람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8)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25조)

제정안은 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5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직위원회와 시장은 박람회 관련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설치·이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조직위원회 및 시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조직위원회 및 시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과정에 주무관청인 산림청장의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박람회 관련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설치·이용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운영의 방향성을 확립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5조에 따르면,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운영 계획의 수립·시행과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관리 등 박람회 준비 개최 및 사후 활용의 핵심주체를 조직위원회로 규정하면서,

안 제25조제1항에서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주체는 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 공동으로 규정한 것은 두 주체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두 주체가 업무상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¹⁾

【 유사입법례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조직위원회와 전라남도지사·순천시장(이하 “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직위원회와 도지사등은 박람회 관련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설치·이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조직위원회 및 도지사등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조직위원회 및 도지사등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조직위원회를 계획 수립의 주체로 결정하는 경우 안 제5조제3항 조직위원회의 업무 규정 각 호에 해당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1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제6조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상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3. 21.>

1. 불가인상분

2.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

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대회 시설물의 파손 등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증가분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료: 산림청

또한, 안 제25조제1항은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은 누락하고 있는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9) 조성사업구역의 지정(안 제26조)

제정안은 산림청장이 제2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조성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26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제25조에 따라 승인된²²⁾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조성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성사업구역 지정·고시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 구역을 명확하게 하고,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에 지장을 주는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등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본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조성사업구역”이라는 용어만으로는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안 제2조에 “조성사업구역” 또는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의 용어

22) 자구정리: “승인된” → “승인한”

를 정의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입법례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있음.

【유사입법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6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승인한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라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이하 “조성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조성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도지사·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청은 조성사업구역의 지정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실시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예정지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안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안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인 울산광역시장이 지정·고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조성사업구역의 지정·고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타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울산광역시장이 이행해야 하므로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울산광역시도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조성사업구역 지정·고시는 박람회장의 물리적 범위를 확정하고, 해당 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바, 국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성사업구역 지정·고시의 주체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의 경우에도 조성사업구역 지정·고시의 주체를 소관 부처 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안 제27조)

제정안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보고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7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장소는 기존의 태화강국가정원과 대략 1.5km 떨어진 삼산여천·매립장으로 박람회장이 이원화됨에 따라, 울산

광역시는 태화강을 활용한 친환경 선박 등 수상 교통수단을 도입 예정 중이며, 공유수면 내 선박 운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이에 박람회 관련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요구되는 매립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박람회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이는 각종 박람회 및 국제대회 지원을 위한 법률에서 빈번하게 규정하고 있는 특례조항임.

【유사입법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5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허가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제17조, 제44조에 따른 허가, 협의 및 승인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
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21)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안 제28조)

제정안은 조직위원회와 시장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투자사업자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8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조직위원회와 시장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이는 박람회 관련시설에 관한 사업주체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박람회 준비 및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특히,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사업의 주체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음.

다만, 사업의 직접 수행 또는 시행자 지정의 주체가 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 공공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두 주체 간 권한 다툼 또는 책임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주체를 공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29조제1항에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28조에서 사업의 시행자를 울산광역시시장으로 정하는 경우 안 제29조제1항의 승인규정이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발생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2) 실시계획의 승인 등(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정안은 제2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장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도록 하며, 이러한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경우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물 허가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제25조에 따른 승인이 ²³⁾ 있는 경우 박람회 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

제 정 안

하고,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행위 등의 제한) 제2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박람회 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2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해제·지정·승인·협의·심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 정 안

8. 「케도운송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건설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10.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5.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6.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1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1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0.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② 시장은 제29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계획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또한,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개발행위의 허가 등을 금지함으로써 박람회 관련시설을 원활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그리고 박람회 관련시설 등의 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토목, 건축, 조경 등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적절한 조치로 보임.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사업은 세제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토지수용권 등 특례가 있어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는데, 안 제31조제5호는 「관광진흥법」 상 절차를 따르고 있지 않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안 제29조제1항 중 “시행자”와 안 제30조 중 “박람회 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은 그 정의가 없어 그 뜻이 불명확한 바, 인용조문을 추가하거나 일반 명사를 사용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음.

23) 조문정리: “승인이” → “사업계획의 승인이”

23)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안 제32조)

제정안은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2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29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는 박람회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또는 사적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임.

24) 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안 제33조·제34조·제38조 및 제39조)

제정안은 박람회의 휘장·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28 울산국제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3조(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박람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28 울산국제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휘장 등을 사용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과태료) ① 제34조를 위반하여 2028 울산국제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는 박람회의 휘장이나 마스코트 등 박람회 상징물과 박람회의 명칭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박람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할 우려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또한, 이를 통하여 박람회 및 조직위원회의 상징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음.

25)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설립·운영(안 제35조)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도심 속 정원에 음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치유 공간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원문화·정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을 울산광역시에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치유의 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음악 치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5조(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설립·운영) ① 국가는 도심 속 정원을 기반으로 음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치유 공간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원문화·정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이하 “치유의 전당”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에 설립·운영한다. ② 산림청장은 치유의 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음악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이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의 전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국가가 박람회장에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을 설립·운영하여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 활용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울산광역시는 남구 삼산동 8-22번지 일원의 50,000m² 넓이의 부지에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로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을 건축하고자 하며, 2027년 1월에 타당성 평가에 착수하여 2029년 해당 건축물 공사에 착공하고 2032년에는 시범운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참고자료 4.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참고)

다만, 제정안은 2028년에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 특별법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바,²⁴⁾ 해당 건축물이 설립·운영되기 전에 제정안이 실효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국제 행사 예산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승인 사항이므로 정해진 예산인 96억원 외의 사업인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설립·운영 사업을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울산광역시는 향후 사업 타당성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국립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6) 권한의 위임 및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36조 및 제37조)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광역시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24) 부칙 안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조직위원회의 임직원 등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6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권한의 위임은 박람회 사업을 위한 행정사무의 처리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많은 행정법규에서 규정하고 있고 유사입법례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는 조직위원회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조직위원회의 임직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죄²⁵⁾에

25)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관하여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임.

27) 시행일 등(안 부칙)

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는 2028년 박람회 개최가 이미 결정되어 제정법을 지체없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다만,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부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²⁶⁾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6) 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23조, 제25조, 26조, 제28조, 제29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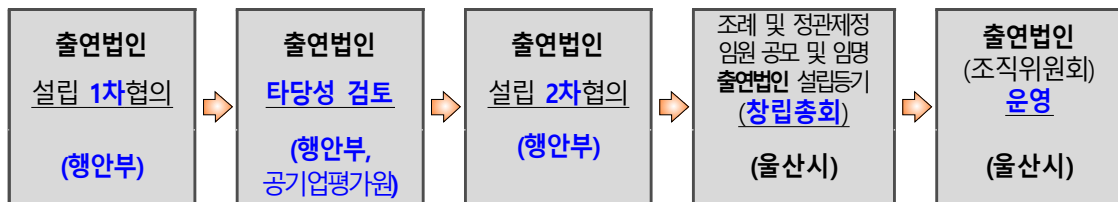
또한, 제정안 시행 이전에 박람회 준비를 위한 사전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보다 조직위원회가 먼저 설립되는 경우²⁷⁾ 등에는 조직위원회에 대한 조직 및 출연된 재산과 파견된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한 경과규정,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관련 경과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4

27)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출연법인(조직위원회) 설립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민관의 가교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출연법인(전담조직)이 필요함

- 출연법인(재단) 설립 절차



※ 「지방출자출연법」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행정안전부)

- 조직위원회 현황

- 법 인 명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 조직·인력
 - 1단계(51명/26.1.~27. 6.) 1사무처, 1사무국, 5팀, 1협력관
 - 2단계(120명/27.7.~28.12.) 1사무처, 3사무국, 13팀, 1협력관
 - 3단계(25명/29.1.~29.12.) 1사무처, 3팀

- 추진상황

- 24. 12. ~ 25. 5.: 출연법인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 25. 5. 13. : 지방 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
 - (결과) 타당성 검토 간소화 승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을 수행기관 선정 등
- 25. 5. 28. : 지방공기업평가원 방문 타당성 예비검토 관련 업무협의
- 25. 6. 13. : 타당성 예비검토 의뢰서 제출 및 예비검토 결과 회신
 - (결과) 타당성 본검토 진행 가능

- 향후계획

- 25. 6. 19. : 전문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 약정 체결 ※25. 7. 2.-현장방문 예정
- 25. 6~9월 : 타당성 검토 수행 및 결과 통보(평가원⇒시,행안부)
- 25. 9월 : 타당성 검토 결과 주민의견 수렴 및 시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 25. 10월 : 출연기관 설립 행안부 2차 협의(최종)
 - ※ 25. 10월 이후 조직위원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예정

□ 기본방향

- (과거) 시민의 힘으로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나 국내 최초의 수변형 생태 정원으로 인정받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스토리를 널리 알리고,
- (미래) 도심 속 버려진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원 문화·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장소 : 국가정원, 삼산·여천매립장, 남산로 일원
- 기간 : 2028. 4. 22. ~ 10. 22.(6개월간)
- 등급 : B등급
- 주최 : 산림청, 울산광역시
- 예산 : 48,320백만원(국 9,664, 시 24,160, 기타 14,496)

□ 추진상황

-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용역 : 2023. 3. ~ 12.
- 국제행사 심사대상 사업 선정(기획재정부) : 2024. 3. 28.
- 국제행사 정부승인(기획재정부) : 2024. 7. 24.
- 국제기구(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승인(제76차 총회/폴란드) : 2024. 9. 5.

□ 향후계획

- (2025) 조직위 구성, 박람회장 실시설계 및 종합실행계획 수립 등
- (2026) 박람회장 시설공사 착공
- (2027) 권역별 시설공사 완공 및 시범운영
- (2028)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 목표 관람객

1) 목표 관람객: 1,300만명(내국인 1,235만명^{95%}, 외국인 방문객 65만명^{5%})

2) 방문객 수 추정

- (내국인) 20~64세 인구추계수(2028년) × 설문조사 방문확률 × 실현율(적극 0.755, 중도 0.314) × 의식과 행동 차이계수(0.770~0.800) + 20세 미만 방문객 수 추정
- (외국인) 방한외국인 관광객수 × 여가/사업 등 목적 지역 방문 비율 × 실현율(울산 0.755, 기타 0.314) × 의식과 행동 차이계수(0.770~0.800)

구분		2028년
표 시 적 장	2028년 인구추계	51,300,095명
	성인 비율(20~64세)	32,180,575명(63%)
종합결과		- (최소) 11,901,952명 - (적정) 13,126,153명 - (최대) 13,602,231명 - (목표) 13,000,000명

□ 경제적 파급효과

-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3조 1,543.6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조 5,916.1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5,017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시나리오1(비관적시나리오: 기본(안) 대비 관람객수 -20%)의 경우, 2조 5,425.1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조 2,816.7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0,103명의 취업유발효과 발생
 - 시나리오2(낙관적시나리오: 기본(안) 대비 관람객수 +20%)의 경우, 3조 7,662.2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조 9,015.6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9,930명의 취업유발효과 발생

참고 2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안)

· 조감도(Zone 1)



· 조감도(Zone 2)



□ 기본방향

- (보전) 도심 팽창으로부터 순천만의 항구적 보전을 위해 정원박람회장 조성
- (채움) 농경지 위에 세계정원, 참여정원, 테마정원 등 다양한 정원을 채워 대한민국 최초 정원박람회 개최

□ 사업개요

- 장소 : 순천만 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 도심 일원 / 193ha
- 기간 : 2023. 4. 1. ~ 10. 31.(7개월)
- 주최 : 산림청, 전라남도, 순천시
- 사 업 비 : 527억 원(국비 83, 도비 50, 시비 140, 수익금 254)

□ 조직위원회 현원 및 기구표

【1처 1실 2본부 3협력관 8부 26팀 93명】 / '23. 10월 기준

구 분		계	3급 상당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사	기타
현원	계	93	1	2	12	30	34	12	1	1	-
	전남도	25	-	1	7	5	11	-	1	-	-
	순천시	66	-	1	4	25	23	12	-	1	-
	관광공사	1	-	-	1	-	-	-	-	-	-
	민 간	1	1	-	-	-	-	-	-	-	-

□ 경제적 파급효과

- 약 3.1조원(생산유발 2조841억원, 부가가치 9,489억원), 취업유발 25,882명
*전남경제연구원, 2023.11.27.

□ 추진과정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 방침 결정 : '19. 7. 18.
- 전남도-순천시-AIPH KOREA 업무협약 : '20. 1. 3.
- 2023 정원박람회 개최 승인(미국 마이애미) : '20. 3. 3.
- 국제행사심사위 2023 정원박람회 승인(467억 원) : '20. 7. 29.
- 조직위 사무국 출범(1국 4부 36명) : '21. 1. 1.
-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1. 3. 15.
- 조직위 사무처 확대·개편(1처 2본부 8부 16팀 68명) : '21. 7. 1.
- 「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 : '21. 8. 17.
- 박람회 종합운영계획 수립 용역 : '21. 7.~12.
- 박람회장 조성 공사 착공 : '21. 12. 10.
- 박람회 사업비 증액(분화구정원 60억 증 총 527억) : '22. 1.
- 조직위 사무처 확대·개편(1처 2본부 11부 26팀 88명) : '22. 6. 2.
-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준비상황 현지실사 : '22. 7. 22.~24.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업변경 승인(사업기간 연장) : '22. 8. 11.
* 2023. 4. 22 ~ 10. 22.(6개월) → 2023. 4. 1. ~ 10. 31.(7개월)
- 정원박람회장 면적 변경(1,850,000m² → 1,931,000m²) : '22. 9. 19.
* 가든마켓, 주차장 연계 박람회 성공개최 및 정원산업 육성 계기 마련
- 박람회 개막식(*대통령 내외 방문) : '23. 3. 31.
- 박람회 개장식(그린아일랜드~남문 앞 광장) : '23. 4. 1.
- 목표 관람객 800만 명 돌파(개장 190일차) : '23. 10. 7.
- 박람회 폐막식(누적 관람객 9,812,157명) : '23. 10. 31.

참고 4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 필요성

- 정원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와 국민 인식이 단순 감상 공간에서 문화·예술·치유 기능이 융합된 복합적 생활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음
- 도심 내 정원에 대한 수요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존 산림복지시설의 외곽 편중과 접근성 한계를 보완할 필요

산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국가 치유정책과의 정합성 확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감형 복지SOC 모델

※ 연간 약 50만 명 이용 예상

(태화강십리대숲 약 77만명, 한밭수목원 약 175만명/2023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편익 연간 11억원¹⁾, 지역경제 소비 유발효과 연간 30억원²⁾ 추정

1) 1인당 의료비 절감액 130,000원×0.85만명, 2) 1인당 체류 소비 약 30,000원×타지역 관광객 10만명

□ 사업개요 [2027 ~ 2032]

- 위치/규모 : 남구 삼산동 8-22번지 일원(삼산매립장)/부지 50,000m²
- 사업내용 : 생활권 기반 도심형 복합 치유정원 플랫폼 조성
- 사업주관 : 울산광역시
- 총사업비 : 50,000백만원
- ※ 박람회 부지 및 기반시설 활용(기존 유사시설 평균 120~130만원/m² 대비 약 20% 수준 예산 절감)

□ 추진계획

- '27. 1. ~ 12. :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8. 1. ~ 12. : 실시설계
- '29. ~ '32. : 공사 및 시범운영

□ 구상[안]

- ❖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은 도심형 복지SOC와 미디어예술이 결합된 정원 정책의 선도모델로, 산림·복지·문화 등 다부처 연계를 통해 생활권 정원 복지를 실증하고, 산업도시 울산을 정서 치유 중심 도시로 전환하는 거점 역할 수행

① [감각정원길] “스마트 환경데이터 기반 AI 치유 산책로”

- 심박수, 체온, 기온, 습도 등 생체·환경 데이터를 분석하여 심리 상태에 맞는 최적 산책코스를 AI가 제안
- 경로마다 반응형 조명, 바람터널, 향기벤치 등 환경 반응 장치 배치

② [명상 사운드가든] “정적·음향 중심의 몰입형 회복 정원”

- 도심 소음을 차단한 무음존과 자연·명상 음악 기반의 정적 공간 조성
- 요가·명상·사운드테라피 기반 치유 프로그램 상시 운영

③ [원예테라피존] “처방형 정원치유 복지 공간”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관 등과 협업해 우울·불안·인지저하 등 증상별 정원 처방 프로그램 운영
- 감각통합 원예 활동, 인지 자극 가드닝 클래스 등 맞춤형 테라피 콘텐츠 개발

④ [아트가든 갤러리] “미디어 예술을 통한 정서 환기형 디지털 정원”

- 정원을 전시장으로 전환한 시민 참여형 미디어 아트 공간
- 울산 산업 유산·도시 기억을 주제로 시민 공모 기반 설치예술, 인터랙티브 조형물 전시
- 미디어 정원, 시간 정원, 반응형 예술작품이 계절·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몰입감 제공

⑤ [컬처 가든스퀘어] “정원과 예술이 만나는 열린 문화무대”

- ‘세계적 공연장’과 연계한 도심형 야외문화공간
- 정원 페스타, 버스킹, 야외 오케스트라 등 상설 정원공연 콘텐츠 운영